

국가생명윤리정책원



수신자 수신자참조 (경유)

제 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· 인증제 인증기관 인센티브 적용 안내

-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75호, 2023.12.26.) 개정·발령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가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- 다음 -

[별표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의 기준 및 방법

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인증 가점	0.5	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* 다만,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인증 기간이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	생명윤리 및 아저에 과하 버르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

붙임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

수신자 수신자참조,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

^{주임행} 조**혜난** 팀장 **고수영** 사무국 **이현아** 센터장 **백수진** 직무대 **백수진** 정원 장 법수진 행 백수진

협조

시행 등록·관리팀-032 (2024.01.17) 접수 (

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2층 / http://www.nibp.kr 전화 027378313 전송 027378456 / jiyo@nibp.kr / 공개